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42호(號) 1935(昭和 10)년 3월 6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0호(號)

1933(昭和 8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14호(號)(철도성선[鐵道省線]과 조선[朝鮮] 내[內] 철도[鐵道] 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[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] 간[間] 화물연대운송규칙[貨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5(昭和 10)년 3월 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3조(條) 부산역(釜山驛) 경유(經由) 성선(省線)과 국선(局線), 북선선(北鮮線), 조철선(朝鐵線), 경남선(京南線), 경동선(京東線) 또는 만철선(滿鐵線) 간(間) 및 남철선(南鐵線) 경유(經由) 성선(省線)과 국선(局線) 간(間) 연대운송화물(連帶運送貨物)에 대(對)해서는 국(局)이 정한 바[所定] 및 아래[左]의 각(各) 호(號)에 의(依)해 대금인환(代金引換)의 취급(取扱)을 함.

- 1 성선(省線) 및 만철선(滿鐵線) 발(發)의 것에 대(對)해서는 인환대금(引換代金)의 최저액(最低額)에 대해 제한(制限)을 첨부(添附)하지 아니함.
- 2 만철선발(滿鐵線發)의 것에 대(對)한 인환대금(引換代金)에 관(關)한 수수료(手數料)는 만철(滿鐵)이 정한 바[所定]에 의(依)함.
- 3 대금인환(代金引換)의 수리역(受理驛)은 각(各) 운수기관(運輸機關)이 정한 바[所定]에 의(依)함.